
재생E 사용(예정) 우수기업 대상 자가용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공고

1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

한국에너지공단 ‘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’ 컨설팅 우수기업* 대상
자가용 태양광 설치 지원(총 5개사)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

* 타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(건물지원사업 등)과 중복 지원 불가

□ 사업기간 : 선정일 ~ ’ 27. 5월

* 사업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대상 :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*

* 시공·공사등록 및 면허는 본 사업기간 중 유지 필수

**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(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)

□ 선정규모 : 1개사

* 차순위 업체는 예비업체로 지정하며, 선정업체의 계약 미체결·포기·자격 상실 시 승계

□ 지원규모 : 총 10,000만원 이내

* 세부내용은 과업 세부내용 참고

2 신청접수

□ 신청기간 : ’ 26. 10. 28. ~ 11. 02.

* 접수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유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
(rel100@goodnews.energy)

□ 제출서류 :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증빙자료*

* 상세내역은 별첨 1 참고

3 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
 ○ 선정 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

- 선정기준 : 시공 역량, 사업 수행계획, 시공 단가 등 종합 평가

평가항목	평가요소
시공 역량 (40점)	■ 최근 3년 태양광 시공실적(설치용량·건수) ■ 건물 지붕형(30~200kW) 유사실적 ■ 기술인력 보유 현황
사업 수행계획 (40점)	■ 공정·일정 계획('27.3월 말 준공, 5개소 대응) ■ 안전관리 계획 ■ 저탄소 모듈 조달, A/S 및 사후관리(설치 후 5년)
시공 단가 (20점)	■ kW당 제시단가의 적정성
가점(3점)	■ 중소기업

* 총점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 선정(세부 평가기준은 별첨 2 참고)

- 추진일정

사업공고	신청접수	시공기업 선정	계약·착공승인 및 시공	설치확인 및 사후관리
'26.10월	'26.10.28~11.02	'26.11월	'26.12~'27.3월 말 (준공)	설치확인일로부터 5년

* 본 추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4 과업 주요내용

- 세부내용 : 저탄소 모듈, 태양광 200kW이하, 지원단가 525천원/kW(VAT제외), 2천만원 이내/1개사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, 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사업 기준 및 절차 등 준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용(예정) 우수 컨설팅 기업(5개사)에게 자가용 태양광 설치 지원

* 시공 대상 사업장은 우수기업 선정 후 주관기관(대한상공회의소)가 배정하며, 선정업체는 책임기관(굿뉴스에너지)와 표준 설치계약 체결

** 공단 지원금은 설치확인 후 책임기관(굿뉴스에너지)가 시공기업에 직접 지급하며, 자부담은 별도 정산

□ **과업범위** : 배정 사업장별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사전검토·안전관리·설치확인·사후관리까지 일괄 수행

- 사전검토·설계 : 현장조사, 구조안전성 검토, 설비 설계(용량, 모듈·인버터·구조물 사양 확정)
- 기자재 공급 : 저탄소 모듈(KS·저탄소 인정서 보유 제품), 인버터, 구조물, 접속반·분전반 등 인증 정품 사용
- 시공 : 구조물 설치, 전기공사, 계통연계 공사(수배전반 연결), REMS 연계, 시운전
- 인허가·검사 : 공사계획 신고, 계통연계 신청, 사용전검사 등 행정 절차 대행 및 공단 착공승인·설치확인 대응
- 설치확인·사후관리 및 A/S : 하자이행보증 설치 후 5년, 설치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 보고 필요 등 (상세내용은 하단 ‘하자보수 및 사후관리’ 참고)

* 지붕 보강·방수·석면 처리·수변전설비 증설 등 표준 범위 외 공사는 내용과 비용을 사전에 서면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(비용 별도 협의)

**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공사비 부담금 및 수혜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

□ **수행절차** : 표준 설치계약 → 착공승인 → 시공 → 사용전검사 → 설치확인 → 사후관리(5년)

- 착수 :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, 예정공정표(인허가 일정 포함), 현장대리인·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제출
- 공정관리 : 월 1회 이상 공정 현황을 책임기관(굿뉴스에너지)에 보고하며, 설계 변경 시 변경 서류 재제출
- 준공 : 배정 사업장 전체를 ' 27.3월 말까지 준공하고 설치확인 신청
- 준공 제출물 : 준공도서, 사용전검사 필증, REMS CID, 기자재 보증서, 운영 매뉴얼 등(별첨 1 참고)

* 수혜기업은 현장 제공 및 착공승인·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

□ 안전 · 품질관리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준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· 사용 및 요청 시 사용내역 제출
- 지붕 · 고소 · 활선 근접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, 추락 방지 조치 및 무전압 확인 선행
-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는 수혜기업과 출입 · 작업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작업구역 통제
- 보험 가입 : 산재 · 고용보험, 건설공사(조립)보험,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보험기간 ' 27.5.31. 포함)
- 하도급 : 관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일부 하도급 시 책임기관에 사전 서면 통지하며, 하수급인 시공에 동일한 책임 부담(과업 양도, 불법 하도급 · 명의 대여 금지)

□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

- 하자이행보증 : 설치 후 5년, 총사업비(VAT · REMS 비용 포함)의 10% 이상(신용등급 B+ 이상은 5% 이상)
- 하자보수 : 하자 통지 후 7일 이내 보수 착수(긴급 시 응급조치), 시공 하자로 인한 지붕 누수 · 균열 등은 보수 및 배상
- 사후관리 : 설치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 보고, REMS 연계 유지, 기자재 결함 시 제조사 보증 청구 대행

* 시공기업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는 별첨 4 참고

※ 본 과업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책임기관-시공사 간 별도계약에 포함하여 같음

5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

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
-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,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업체는 과업요청서에 따라 착공 승인, 설치확인, 사후관리 단계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별첨 1 참고)
- 선정업체는 하자이행보증, 사후관리 등 시공기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사업 취소, 지원금 환수, 향후 지원센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(별첨 4 참고)

□ 문의처 : 굿뉴스에너지 주식회사(re100@goodnews.energy)

- (별첨) 1. 제출서류 목록
2. 선정 평가기준
3. 시공업체 선정 신청서(양식)
4. 시공기업 의무 및 제재. 끝.